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1. 9.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¹⁾

-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1년 8월 18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II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4.0%, 1조 7,857억원을 증액한 46조 6,480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총 계 규 모	44,862,324	46,648,074	1,785,749	4.0
일 반 회 계	31,664,949	33,569,785	1,904,836	6.0
특 별 회 계	13,197,375	13,078,288	△119,087	△0.9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1조 9,048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7억 1,100만원³⁾을 감액편성 요청하고, ②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179억 700만원⁴⁾, ③국고보조금등은 1조 5,169억 4,000만원⁵⁾, ④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907억원⁶⁾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190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⁷⁾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4조 8,623억 2,400만원)보다 4.0%, 1조 7,857억 4,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1조 9,048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행정국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 8,556억 3,700만원), 경제정책실 소관 **2021 희망일자리사업**(259억 8,3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35개 실·국·본부의 20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5개 기타특별회계가 6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1,190억 8,700만원을 증·감 편성 요청한 것임

3) 공유재산임대료(211-02) :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기타 △207억 1,100만원

4) 보통교부세(311-01) : 분권교부세 보전분 179억 700만원

5) ①국고보조금(1조 5,188억 7,900만원),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30억 1,800만원), ③기금(10억 8,000만원)

6) 예수금수입(722-0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3,907억원

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318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1,295억 5,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171억 8,700만원), 소방특별회계(△11억 5,000만원)

〈표 2-2A〉 조직별 세출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율
총 계	46,648,074	100.00	44,862,324	100.00	1,785,749	3.98
대 변 인	1,575	0.00	1,620	0.0	△45	△2.78
시 민 소 통 기 획 관	101,803	0.22	102,311	0.23	△508	△0.50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3,781	0.01	3,781	0.01	-	-
미 래 청 년 기 획 단	101,079	0.22	102,329	0.23	△1,250	△1.2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2,853,896	6.12	2,867,642	6.39	△13,745	△0.48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436,475	0.94	416,184	0.93	20,291	4.88
비 상 기 획 관	2,923	0.01	3,078	0.01	△154	△5.02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관	109,838	0.24	110,432	0.25	△594	△0.54
남 북 협 력 주 진 단	415	0.00	415	0.00	-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1,233	0.00	1,248	0.00	△15	△1.20
기 획 조 정 실	1,766,857	3.79	1,735,239	3.87	31,618	1.82
소 방 재 난 본 부	1,749,127	3.75	1,751,427	3.90	△2,300	△0.13
경 제 정 책 실	734,475	1.57	712,240	1.59	22,235	3.12
복 지 정 책 실	8,777,894	18.82	8,696,698	19.39	81,195	0.93
도 시 교 통 실	3,577,242	7.67	3,571,942	7.96	5,300	0.15
문 화 본 부	558,202	1.20	565,186	1.26	△6,983	△1.24
기 후 환 경 본 부	712,325	1.53	743,157	1.66	△30,831	△4.15
행 정 국	6,232,680	13.36	4,378,611	9.76	1,854,068	42.34
재 무 국	3,128,916	6.71	3,131,451	6.98	△2,535	△0.08
평 생 교 육 국	4,451,371	9.54	4,451,592	9.92	△221	△0.00
관 광 체 육 국	257,076	0.55	262,767	0.59	△5,690	△2.17
시 민 건 강 국	651,162	1.40	628,053	1.40	23,108	3.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12~14

〈표 2-2B〉 조직별 세출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증 감 율
시 민 협 력 국	77,769	0.17	78,446	0.17	△677	△0.86
공 공 개 발 기 획 단	6,626	0.01	6,761	0.02	△135	△2.00
기 술 심 사 담 당 관	1,934	0.00	1,944	0.00	△10	△0.51
안 전 총 괄 실	1,404,018	3.01	1,361,838	3.04	42,180	3.10
균 형 발 전 본 부	1,648,922	3.53	1,680,103	3.75	△31,181	△1.86
도 시 계 획 국	31,908	0.07	32,190	0.07	△282	△0.88
주 택 정 책 실	3,395,535	7.28	3,599,373	8.02	△203,838	△5.66
푸 른 도 시 국	854,725	1.83	854,873	1.91	△148	△0.02
물 순 환 안 전 국	1,094,030	2.35	1,099,610	2.45	△5,580	△0.51
인 권 담 당 관	1,356	0.00	1,356	0.00	-	-
도시기반시설본부	971,943	2.08	949,873	2.12	22,070	2.32
상 수 도 사 업 본 부	787,498	1.69	787,498	1.76	-	-
한 강 사 업 본 부	91,029	0.20	91,254	0.20	△225	△0.25
인 재 개 발 원	12,174	0.03	12,925	0.03	△750	△5.81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4,912	0.03	15,137	0.03	△225	△1.49
시 립 미 술 관	11,855	0.03	11,875	0.03	△20	△0.17
의 회 사 무 처	29,112	0.06	37,462	0.08	△8,350	△22.29
감 사 위 원 회	1,721	0.00	1,741	0.00	△20	△1.1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57	0.00	457	0.00	-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85	0.00	185	0.00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12~14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1)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⁸⁾은 기정예산(5조 7,552억 5,000만원)보다 26.3%, 1조 5,169억 4,000만원 증액된 7조 2,721억 9,1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5조 4,452억 5,700만원)보다 1조 5,188억 7,900만원 증액된 6조 9,641억 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 4,760억 7,500만원 증액), **2021 희망일자리사업**(246억 900만원 순증), **긴급복지지원사업**(112억 9,700만원 증액),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104억 6,700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101억 3,700만원 증액)등 11개 사업(1조 5,461억 8,400만원)에 대해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147억 1,200만원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40억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28억 6,800만원 감액) 등 18개 사업(△273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8)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은 ①국고보조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표 3-1〉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감 액	추 경 안	세 부 내 역
국고보조금등	5,755,250	1,516,940	7,272,19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76,075 2021 희망일자리사업 24,609 긴급복지지원사업 11,297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0,46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0,137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5,000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3,300 자활근로사업 지원 2,13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1,188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000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97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4,712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0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868 가정양육수당 지원 △1,800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16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745 국가하천 유지보수 △55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27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29 희망키움통장Ⅱ △300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1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6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51 유기질 비료 지원 △30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경상) △17 토양개량제 공급 △4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 양봉산물 정보제공 △0.4
국고보조금	5,445,257	1,518,879	6,964,136	

- 아울러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의 세입과목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에 대해 △30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기금은 1개 사업에 대해 10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3-2〉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에 대한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감 액	추 경 안	세 부 내 역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4,734	△3,018	61,716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2,590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39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89
기 금	245,258	1,080	246,338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080

(2)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

-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등**의 경우, 2개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바, 동 예산과목에 대한 세입경정은 중앙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당초 내시액을 감액 변경 통보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사업부서가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의정부시계)**사업의 가내시액(81억 1,300만원)중 기 교부액(51억 1,300만원)을 제외한 30억원에 대해 국비 교부를 신청하였으나,⁹⁾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기 교부('21. 4월 완료)한 사항으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곤란”하다고 회신함에 따라¹⁰⁾ 기정예산(352억 7,000만원)중 교부되지 않은 △3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경북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이 당초 내시액(25억 5,000만원)¹¹⁾보다 △3억원 감액된 22억 5,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된 바,¹²⁾
 - 이번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동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885억 5,500만원)보다 △3억원 감액된 882억 5,5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한 것임

9)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6439 ('21. 5. 6), “광역도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757 ('21. 5. 1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회신(동부간선 광역도로)”

11)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5442 ('20.10.23), “2021년 경북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통보”

12)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6548 ('20.12.14), “2021년 경북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알림”

〈표 3-3〉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등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 입 과 목)	가정예산	감 액	추경안	세 부 내 역
계	155,158	△3,300	151,85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5,270	△3,000	32,27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5,270	△3,000	△3,000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의정부시계) △3,000
도시개발 특별회계	119,888	△300	119,588	
국 고 보 조 금	88,555	△300	88,255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300

2.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및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고,¹³⁾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는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¹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880억원)보다 9.5%, 179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전액 **보통교부세**로 제출됨
 -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가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1,39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회계연도 개시이후 행정안전부가 당초 가내시보다 7,600만원 증액된 1,396억 6,300만원을 확정내시하고, 지난 '20회계연도 정부결산정산분(33억 8,300만원)을 반영하여 '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을 통해 본예산보다 34억 5,900만원 증액된 1,430억 4,6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¹⁵⁾

13)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1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35

다. 지역교육: 100분의 1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후략)

15)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2520 ('20.12.31) “2021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결과 통지”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626 ('21. 4. 8) “2020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교부내역 확정 통지”

-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21년도 보통교부세를 추가 통보함에 따라¹⁶⁾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세입과목중 보통교부세를 기정예산(1,430억 4,600만원)보다 179억 700만원 증액된 1,609억 5,300만원으로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2 1 년 도	본 예 산	-	-	139,587
	'21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 ^{주1)}	-	-	139,587
' 2 1 년 도	제 1 회 추 경 예 산	139,587	3,459	143,046
	'21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주2)}	139,587	76	139,663
	'20회계연도 정부결산정산분 ^{주3)}	-	3,383	3,383
' 2 1 년 도	제 2 회 추 경 예 산 (안)	143,046	17,907	160,953
	'21년도 제2회 정부추경분 ^{주4)}	139,663	17,907	157,570

주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974 ('20.10.28)

주2) 행정안전부, 교부세과-2520 ('20.12.31)

주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626 ('21. 4. 8)

주4)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305 ('21. 7.24)

16)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305 ('21. 7.24) “2021년도 보통교부세 추경분 교부결정 통지”

3. 지방채에 대한 감액조정

- 지방채의 경우, 2개 특별회계, 2개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이와 연동하여 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도 수정하여 제출하였음¹⁷⁾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방채중 모집공채를 당초(2,456억 5,000만원)보다 △886억 5,000만원 감액한 1,570억원으로 재개발 매입임대사업과 관련된 모집공채를 조정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중 모집공채를 당초(7,025억원)보다 △168억 8,700만원 감액한 6,856억 1,300만원으로 조정요청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된 모집공채를 감액요청한 것임

〈표 3-5〉 특별회계 지방채 감액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기정예산	감 액	추 경 안
주택사업특별회계	모집공채	재개발 매입임대	245,650	△88,650	157,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철도 건설	18,000	△16,887	1,113

17) '21년도 예산총칙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본 예산	제 1 회 추 경	제 2 회 추 경
일반회계	36,600	36,600	36,6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91,950	1,091,950	1,091,95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1,000	111,000	11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45,650	245,650	157,000
도시개발특별회계	710,683	710,683	693,796
균형발전특별회계	34,800	34,800	34,800

4.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감액조정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조 2,715억 600만원)보다 △1.6%, △207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전액 **공유재산임대료**로 확인됨
- 서울시의회는 지난 '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대부료를 하향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¹⁸⁾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 시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한 바,¹⁹⁾
 - 지난 7월 개최된 '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대상²⁰⁾으로 올해 하반기 6개월분('21. 7. 1 ~ '21.12.31) 임대료에 대해 당초 적용한 요율의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1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9)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7785 ('21. 7.15), 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29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7345 ('21. 7.15),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20)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7785 ('21. 7.15), 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29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임대료 예상 감면금액(7월 12월)〉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시유재산				
	소계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풍물시장	기타*
점포수	4,249	2,571	640	804	234
소요예산	217.5	93.3	40.8	1.8	81.6

* 한강매점,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대공원 등

※ 시유재산만 포함되며,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은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 기정예산(1,655억 5,800만원)보다 △207억 1,100만원 감액 조정된 1,448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²¹⁾

2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7521 ('21. 7.20), “'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주요변경사항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감면[자산관리과-4176('20. 3.31)호], 2차 감면[자산관리과-11511('20.10. 8)호], 3차 감면[자산관리과-14889('20.12.31호)]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4차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을 작성하였음 ※4차 지원 : 6개월간 (감면, 납부유예 '21. 7~12월)

5.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편성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예수금수입**을 당초 본예산(398억원)보다 3,907억원 증액한 4,305억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통합 계정의 용도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으로 정하고 있어,²²⁾ 이번 추경안을 통해 통합 계정에 예탁된 3,907억을 일반회계의 세입과목중 **예수금수입**으로 세입조치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성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²³⁾
 - 동 세입조치가 기금의 지출항목인 **예탁금**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벗어난 운용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재원을 확보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출계획중 **재무활동**(일반회계 예탁금 등)을 20% 초과하여 변경한 것으로 지난 8월 18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음

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23)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 7), p.313

〈표 3-6〉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기정예산	증 감	추 경 안	세 부 내 역
일 반 회 계	39,800	390,700	430,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390,700

-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해당 3개 특별회계의 내부거래에 대해 기정예산(1조 8,612억 1,000만원)보다 △ 0.5%, △10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조 8,509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이번 추경의 세출재원을 마련하고자 회계간·기금간 내부거래 규모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금전입금**의 경우, 기정예산(1,200억원)보다 873억원 증액된 2,073억원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873억원을 전입 받는 것임
 -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²⁴⁾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의 경우에도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²⁵⁾
 - 서울시가 지난 8월 18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5)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 7), p.307

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과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7〉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 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과 목	기정예산	증 감 액	추 경 안	세 부 내 역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기타회계 전 입 금	55,500	△55,500	0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5,500
	기 금 전 입 금	120,000	87,300	207,3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7,3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기타회계 전 입 금	831,867	△40,900	790,967	기타회계전입금(도정→국민) 37,000 기타회계전입금(재촉→국민) 300 일반회계전입금 △78,200
소 방 특 별 회 계	기타회계 전 입 금	853,843	△1,150	852,693	일반회계전입금 △1,150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의 특징과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①정부의 제2회 추경에 따라 추가교부 되는 중앙정부이전재원 1조 5,315억 4,700만원²⁶⁾과 ②지방채 감액분 △ 1,055억 3,700만원 및 ③35개 실·본부·국의 202개 세부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44조 8,623억 2,400만원)보다 4.0%, 1조 7,857억 4,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²⁷⁾은 '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의결('21.6)한 내용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제4조) 및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수정요청한 것으로,
 -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과 공채발행 및 차입금 등을 조정하여 제출한 것임

-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 기정예산 44조 8,623억 2,400만원을 46조 6,480억 7,400만원으로 증액조정을 요청한 바,
 - 제출된 추경안은 기정예산(44조 8,623억 2,400만원)보다 1조 7,857억 4,900만원 증액된 46조 6,480억 7,400만원을 편성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6) 국고보조금등 1조 5,136억 4,090만원, 지방교부세 179억 700만원

27)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비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데 있어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경우, 주택개발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방채를 감액(각각 △887억원, △169억원) 편성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4조의 공채발행 및 차입금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 예산총칙 제4조중 특별회계 지방채 조정요청 내역

제1회 추경 예산		제2회 추경 안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4)주택개발특별회계	2,456억원	(4)주택개발특별회계	1,570억원
(5)도시개발특별회계	7,106억원	(5)도시개발특별회계	6,937억원

- 제출된 추경안을 반영한 경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 잔액은 3,280억원으로 확인되며, 금번 추경안과 별도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3,000억원)」²⁸⁾이 제출되어 있는바, 제출된 동의안 대로 3,0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4-2〉 202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현황(8월 기준)

(단위 : 억원)

한도액	발행			제2회 추경 조정안	한도 잔액	
	당초계획	발행실적	발행예정		추경 미반영시	추경 반영시
(A)	(B=C+D)	(C)	(D)	(E)	(F=A-B)	(G=A-B-E)
28,042	25,817	10,785	15,032	△1,055	2,225	3,280 ^{주1)}

※ 주1) 3,000억원 발행시 실제 한도잔액은 280억원으로 검토됨

28)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 의안번호 : 2726, 제출일 : 2021. 8. 18, 회부일 : 2021. 8. 19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3,000억원

○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에서 ①일반예비비 1,308억 4,100만원과 ②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508억 4,100만원으로 의결한 것이나,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중 ①일반예비비보다 1억 500만원 증액된 1,309억 4,6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한 것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등²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목적예비비의 경우, 편성한도가 없으나,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1,309억 4,600만원)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총액(33조 5,697억 8,579만원)의 0.4%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1,509억 4,600만원)³⁰⁾는 기정예산(1,508억 4,100만원)보다 1억 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29)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 7), p.132

○ 일반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한도 범위 내 편성 필요)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30) 일반예비비 1,309억 4,638만원, 목적예비비 200억원

2. 국비 증액 편성요청 사업

○ 금번 추경안중 국비만 증액요청된 사업은 시민건강국 소관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³¹⁾ 1개 사업임

- 동 국비 증액요청 건은 지난 8월 4일, 질병관리청이 서울시에 국고보조금 (11억 8,800만원)을 교부결정³²⁾함에 따라 11억 8,800만원(전액국비)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 국비만 증액편성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국비	시비		
시민건강국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	(x1,188) 1,188	1,188	-	(x1,188) 1,188

- 동 사업의 경우, 추경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11억 8,800만원)를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 지난 8월 6일, 질병관리청이 통보한 동 사업의 운영지침³³⁾에는 코로나 19 진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①하절기(6~8월) 무더위 등에 노출된 검사대상자(일반국민)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냉풍기, 선풍기, 그늘막, 얼음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②“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관련 운영비 목적” 외에는 사업비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3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1. 8), p.668

32)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6086 ('21. 8. 4)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33)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6280 ('21. 8. 6)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금 신청 및 운영지침 안내”

- 그러나 폭염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냉풍기, 선풍기, 얼음물 등의 소요가 한시적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음에도 3/4분기가 곧 도래하는 금번 제2회 추경안에 일종의 목적성 경비인 동 국비증액분을 편성요청한 것은 국비교부의 적시성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둔감시키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소요예산을 지난 8월 18일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시켜 편성 요청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목적 을 우선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시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총칙 제9조³⁴⁾를 통해 간주처리 하는 방안도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3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3. 국비·시비 증액 편성요청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국·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은 행정국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 8,556억 3,700만원), 경제정책실 소관 **2021 희망일자리사업**(259억 8,300만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임
- 행정국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³⁵⁾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조 8,556억 3,7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21년 7월, 정부의 제2회 추경을 통해 ①소득하위 80%에 해당되는 가구와 ②소득하위 80%보다 완화된 특례³⁶⁾를 적용받는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³⁷⁾을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민지원금(1조 8,519억 7,500만원)과 부대비용(36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 추경안 편성현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역	추경안		
				국비	시비	
자	치	단	체	1,855,637	1,476,075	379,562
경	상	보	조	금		
	○ 국민지원금			1,851,975	1,473,162	378,813
	- 2,104,517,800,000원 × 88%(국비 70%, 시비 18%)					
	○ 부대비용(인건비, 장비임차, 홍보비)			3,661	2,912	749
	- 4,161,154,491원 × 88%(국비 70%, 시비 18%)					

35)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1. 8), p.540

36) 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385 ('21. 7.27) ②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7069 ('21. 8.23)

■ 맞벌이가구·1인가구 특례기준

○ 맞벌이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1인가구 :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으로 기준 상향

37)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온·오프라인 신청시 선택한 수단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제출함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7069 ('21. 8.23)

- 동 사업은 국비·시비·구비를 70:18:12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서울시의 추계를 바탕으로 국비 1조 4,760억 7,500만원과 이에 대응되는 시비 3,795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금번 추경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당일인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국비 1조 2,473억 7,400만원을 서울시에 교부하기로 내시한 바,³⁸⁾
 - 편성요청된 국비(1조 4,760억 7,500만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내시한 국비(1조 2,473억 7,400만원)와 2,287억 100만원의 차이가 있고, 매칭 편성되는 시비(3,795억 6,200만원)의 경우에도 588억 8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842만명으로 추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는 지원대상을 710만명으로 추계하여 내시한 것으로,
 - 지난 '20년도 제2회 추경에서 서울시 전체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³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국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총 2조 5,062억 8,100만원⁴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증가되어 회계연도말 간주처리⁴¹⁾와 예비비사용⁴²⁾을 통해 부족사업비를 충당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요청한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에 있어 유동성이 내재된 사례로 사료됨

38)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698 ('21. 8.1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 및 등록요청”

39)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40) 국비 2조 1,833억 1,600만원, 시비 3,229억 6,400만원

41) '20년 11월, 국비 338억 5,800만원을 간주처리함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607 ('21. 3.24)

42) '20년 12월, 국비(338억 5,800만원)에 대응되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52억 8,800만원을 지출함 : ① 서울특별시,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Ⅲ-1」, p.1268, ②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24416 ('20.11.1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 예비비 사용계획”

〈표 4-5〉 서울시 추경안과 중앙정부 내시간 사업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계	
		국비	시비 ^{주1)}
	(88%)	(70%)	(18%)
	①=②+③	②	③
추경안 (’21. 8.18 제출) ㉑	계	1,855,637	379,562
	국민지원금 ^{주2)}	1,851,975	378,813
	부 대 비 용	3,661	749
중앙정부 내시 (’21. 8.18 통보) ㉒	계	1,568,127	320,753
	국민지원금 ^{주3)}	1,562,030	319,506
	부 대 비 용	6,097	1,247
차액 ㉑-㉒	계	287,509	58,808
	국 민 지 원 금	289,945	59,307
	부 대 비 용	△2,435	△498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7069 (’21. 8.23) 재구성
- 주1) 국비(70%)에 대응되는 지방비(30%)중 구비(12%)는 제외한 것임
- 주2) 서울시가 추계한 지원대상 : 842만명
- 957만명(’21년 6월말 기준 서울시 인구수) × 88% = 842만명
- 주3) 중앙정부 내시에 따른 지원대상 : 710만명
-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임

○ 경제정책실 소관 **2021 희망일자리사업**⁴³⁾은 지난 7월, 제2회 정부추경에 따라 국비 246억 9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국·시비를 매칭하고자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43)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1. 8), p.258

- '21년 7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국비 246억 900만원을 교부하기로 확정하고⁴⁴⁾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 13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6〉 추경안 편성현황 (2021 희망일자리사업)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 출 내 역
계	-	(x24,609) 25,983	(x24,609) 25,983	25,98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x57) 63	(x57) 63	○본청부서 희망일자리사업 참 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63
사 무 관 리 비	-	(x1) 1	(x1) 1	○본청부서 희망일자리사업 물품 구입 등 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x24,479) 25,839	(x24,479) 25,839	○자치구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비 25,839
공 기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x70) 78	(x70) 78	○투자·출연기관 희망일자리 사업 사업비 78

-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통해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지난 제1회 추경 예산('21. 7)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인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⁴⁵⁾(393억 5,800만원)과 유사하나, 중앙부처가 사업명을 “2021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통보한 바,⁴⁶⁾

44)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2884 ('21. 7.27) “'21년 제2회 추경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및 사업계획 수정제출 요청”

45)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1108 ('21. 3.25) “2021년 제1회 추경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 중앙부처 사업명 : 희망근로 지원사업

- 중앙부처 내역사업명 :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46)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2884 ('21. 7.27) “'21년 제2회 추경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및 사업계획 수정제출 요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7)과 서울시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 48)에는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명과 내역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정책실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⁴⁹⁾은 기정예산 300억 3,400만원 보다 169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생계 곤란, 실직 등의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복지시설 등을 통해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 4-7〉 추경안 편성현황 (긴급복지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20,023) 30,034	(x11,297) 16,945	(x31,320) 46,980	○ 긴급복지지원사업 16,945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소득·재산의 심사기준을 '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나,
- 지난 '21년 7월,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제2회 추경을 반영하여 '21년 9월 까지 한시적 기준완화⁵⁰⁾를 연장 적용하고자 국비를 추가교부⁵¹⁾함에 따라

47)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 7), p.88

48) 서울특별시,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 8), p.101

49)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1. 8), p.327

50)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1. 8), p.327~328

■ 한시적 기준완화 내용

국비 112억 9,700만원과 이에 대응되는 시비 5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복지정책실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⁵²⁾는 기정예산 8,707억 2,200만원(국비 5,883억 6,100만원 포함)보다 국비 101억 3,700만원이 포함된 148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지난 '21년 7월, 정부의 제2회 추경을 반영하여 변경내시⁵³⁾함에 따라 국비(101억 3,700만원)와 매칭 되는 시비 47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8〉 추경안 편성현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증 액	추 경 (안)	산 출 내 역
계	(x588,361) 870,722	(x10,137) 14,867	(x598,498) 885,590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x14,612) 29,224	-	(x14,612) 29,224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x573,749) 841,498	(x10,137) 14,867	(x583,886) 856,366	○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4,867

- 동 사업의 경우, '21년도 본예산 심사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⁵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수를 23만명으로 파악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의 사업별설명서에는 수급자수가 27만 5,000명으로 4만 5,000명 증가된 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동일

○ (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 3억 5,000만원 이하

5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634 ('21. 7.28) “2021년도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4차 변경내시 통보”

52)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1. 8), p.309

5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668 ('21. 7.29)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변경내시 통보”

54) 서울특별시(복지정책실), 「202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81

- 당초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55)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도부터 전면폐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21년 10월부터 조기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55)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20. 8), p.32~34

〈표 4-9〉 국비·시비 증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증액		추경(안)
				국비	시비	
행정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x-) -	(x1,476,075) 1,855,637	1,476,075	379,562	(x1,476,075) 1,855,637
경제정책실	2021 희망 일자리사업	(x-) -	(x24,609) 25,983	24,609	1,374	(x24,609) 25,983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서울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x17,040) 54,471	(x5,000) 22,270	5,000	17,270	(x22,040) 76,741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x6,156) 12,313	(x10,467) 20,935	10,467	10,467	(x16,624) 33,248
복지정책실	긴급복지지원사업	(x20,023) 30,034	(x11,297) 16,945	11,297	5,648	(x31,320) 46,980
복지정책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x588,361) 870,722	(x10,137) 14,867	10,137	4,730	(x598,498) 885,590
여성가족 정책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x-) -	(x3,300) 3,575	3,300	275	(x3,300) 3,575
복지정책실	자활근로사업 지원	(x69,703) 102,231	(x2,139) 3,137	2,139	998	(x71,842) 105,369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소상공인 전용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지원	(x-) 8,809	(x1,080) 2,160	1,080	1,080	(x1,080) 10,969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x74,165) 160,696	(x970) 2,103	970	1,132	(x75,136) 162,799
시민건강국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활동비 지원	(x-) -	(x1,000) 2,000	1,000	1,000	(x1,000) 2,000

4. 시비 증액 편성요청 사업

○ 금번 추경안중 18개 세부사업은 시비만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상환(도시개발)**(838억원 증액)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은 회계간 혹은 기금간 내부거래 등 재원을 전출·전입하는 **재무활동**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 밖에 일반회계 예비비 1억 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바, 세출재원 조정 후 소규모 재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포함한 7개 회계의 예비비를 일부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0〉 시비를 증액편성한 사업현황(재무활동)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 획 조 정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상 환 (도 시 개 발)	61,720	83,800	145,520
안 전 총 괄 실	재 난 관 리 기 금 적 립	199,023	64,830	263,853
복 지 정 책 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70,637	60,376	131,013
주 택 정 책 실	기타회계 전출금(도정→국민)	166,000	37,000	203,000
주 택 정 책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	34,500	34,500
도시기반시설본부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수 금 상 환	-	31,800	31,800
도 시 교 통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상 환 ^{주1)}	-	17,200	17,200
도시기반시설본부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	16,300	16,300
도 시 교 통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상 환 ^{주2)}	-	3,800	3,800
기 획 조 정 실	여 유 자 금 예 탁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3,100	3,100
주 택 정 책 실	기타회계전출금(재촉→국민)	213,200	300	213,500

※ 주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요청된 것임

주2)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요청된 것임

〈표 4-11〉 시비를 증액편성한 사업현황(예비비)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회계명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비비	150,841	105	150,946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551	73	1,624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도시개발)	1,953	69	2,023
도시교통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교통관리계정)	954	96	1,05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	67	189
주택정책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국민)	253	4	25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비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8	30	168

5. 세출예산 감액 편성요청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6개 세부사업에 대해 △5,385억 700만원 (국비 △336억 2,300만원, 시비 △5,048억 8,3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4-12〉 추가경정예산안 감액편성 사업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세부 사업수	기정예산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 계	236	3,922,811	909,815	3,012,995	△538,507	△33,623	△504,883	3,384,304	876,192	2,508,111
일반회계	187	2,648,513	569,738	2,078,775	△191,278	△30,323	△160,955	2,457,234	539,415	1,917,819
특별회계	49	1,274,298	340,077	934,220	△347,228	△3,300	△343,928	927,069	336,777	590,292
기타특별회계	49	1,274,298	340,077	934,220	△347,228	△3,300	△343,928	927,069	336,777	590,292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3	105,146	5,588	99,558	△16,330	-	△16,330	94,404	5,588	88,816
교통사업특별회계	4	4,969	-	4,969	△3,896	-	△3,896	1,072	-	1,07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	107,642	11,113	96,529	△20,267	△3,000	△17,267	87,374	8,113	79,261
주택사업특별회계	13	814,963	317,097	497,866	△201,354	-	△201,354	613,609	317,097	296,512
도시개발특별회계	17	231,948	6,279	225,669	△101,056	△300	△100,756	130,891	5,979	124,912
균형발전특별회계	3	6,157	-	6,157	△3,173	-	△3,173	2,983	-	2,983
소방안전특별회계	1	3,470	-	3,470	△1,150	-	△1,150	2,320	-	2,320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국민계정)**을 포함한 187개 세부사업에 △1,912억 7,800만원(국비 △303억 2,300만원, 시비 △1,609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하고,
- 특별회계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포함한 49개 세부사업에 △3,472억 2,800만원(국비 △33억원, 시비 △3,439억 2,8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 감액 요청된 236개 사업을 국·시비 재원별로 검토하면, 회계연도중 국비 감액통보 등에 따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국비 △147억 1,200만원 감액, 시비 △135억 9,800만원)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90억 9,400만원(국비 △336억 2,300만원, 시비 △254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3〉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액편성 사업 (국비)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주1)}	기정예산	감 액		추 경 안	
			국 비	시 비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x50,741) 91,860	(xΔ14,712) Δ28,311	Δ14,712	Δ13,598	(x36,028) 63,549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x342,122) 634,826	(xΔ4,000) Δ6,934	Δ4,000	Δ2,934	(x338,122) 627,891
안전총괄실	동부간설도로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x8,113) 44,856	(xΔ3,000) Δ3,000	Δ3,000	-	(x5,113) 41,856
복지정책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x43,976) 109,514	(xΔ2,868) Δ6,656	Δ2,868	Δ3,788	(x41,107) 102,85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x9,691) 12,922	(xΔ2,590) Δ3,454	Δ2,590	Δ864	(x7,101) 9,468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x94,156) 174,711	(xΔ1,800) Δ3,340	Δ1,800	Δ1,540	(x92,356) 171,371
물순환안전국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x1,160) 2,320	(xΔ1,160) Δ2,320	Δ1,160	Δ1,160	-
경제정책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저가 지원	(x6,905) 8,976	(xΔ745) Δ969	Δ745	Δ223	(x6,159) 8,007
물순환안전국	국가하천 유지보수	(x4,737) 4,737	(xΔ555) Δ555	Δ555	-	(x4,182) 4,182
경제정책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x3,488) 6,551	(xΔ527) Δ602	Δ527	Δ74	(x2,960) 5,948
"	지역 맞춤형 형 일자리 창출 지원	(x1,469) 2,992	(xΔ339) Δ691	Δ339	Δ352	(x1,130) 2,301
복지정책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x718) 1,806	(xΔ329) Δ715	Δ329	Δ385	(x386) 1,091
"	희망키움통장 II	(x2,773) 4,675	(xΔ300) Δ505	Δ300	Δ205	(x2,473) 4,169
균형발전본부	경북공광화문 일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x2,555) 2,555	(xΔ300) Δ300	Δ300	-	(x2,250) 2,250
복지정책실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x300) 609	(xΔ104) Δ209	Δ104	Δ14	(x193) 400
"	장애인 직업 재활 시 기능보강	(x1,238) 2,476	(xΔ96) Δ192	Δ96	Δ96	(x1,142) 2,284
경제정책실	서울 지역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x745) 1,113	(xΔ89) Δ89	Δ89	-	(x655) 1,02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x84) 280	(xΔ51) Δ170	Δ51	Δ119	(x33) 110
경제정책실	유기질 비료 지원	(x90) 180	(xΔ30) Δ30	Δ30	-	(x60) 150
시민건강국	가축방역 - 예방약품 등 지원 (국비, 경상)	(x110) 226	(xΔ17) Δ39	Δ17	Δ22	(x93) 187
경제정책실	토양개량제 공급	(x21) 26	(xΔ4) Δ4	Δ4	-	(x16) 21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x14) 28	(xΔ1) Δ3	Δ1	Δ1	(x12) 24
"	양봉산물 정보 제공	(x4.4) 4.4	(xΔ0.4) Δ0.4	Δ0.4	-	(x4) 4

○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감액요청된 236개 사업중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시비 △1,563억 6,300만원 감액)을 포함한 213개 사업은 전액 시비만을 감액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4,794억 1,300만원의 감액 조정을 요청한 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 매칭분 등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감액 조정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4A〉 감액편성 요청사업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 액	추 경 안
주택정책실	재 개발 임대 주택 매 입	372,110	△156,363	215,746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일 반 절 출 금 (국 민 계 정)	78,200	△78,200	-
기획조정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 출 금 (도 시 개 발)	55,500	△55,500	-
주택정책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407,155	△24,500	382,655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 하 차 도 건 설 사 업	21,430	△17,567	3,863
주택정책실	사 회 주 택 공 금	17,388	△15,069	2,319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	100,124	△15,000	85,124
안전총괄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79,744	△10,000	69,744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8,328	△7,581	747
균형발전본부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6,673	△6,673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9,891	△5,500	14,391
안전총괄실	백년다리 (한강대교 남단 보 행 교) 조 성 사 업	5,000	△5,000	-
도시교통실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14,096	△4,400	9,696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1,409	△4,200	27,209
복지정책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분 담 금	204,997	△3,500	201,497
안전총괄실	성산대교 성능 개선	14,400	△4,000	10,400

※ 주1) 10억원 이상 시비를 감액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한정

〈표 4-14B〉 감액편성 요청사업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 액	추 경 안
도 시 교 통 실	강변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 개선 (전환 사업)	5,031	△3,181	1,850
복 지 정 책 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18,755	△2,515	16,239
재 무 국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	△2,500	-
균형발전본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8,710	△2,500	6,210
여성가족정책실	특 화 보 육 지 원 (자 체)	42,919	△2,493	40,425
도 시 교 통 실	차 없는 거리 운영	2,974	△2,277	697
물순환안전국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	1,900	△1,900	-
균형발전본부	마 장 축 산 물 시 장 일 대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5,390	△1,800	3,590
문 화 본 부	서서울미술관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2,465	△1,777	687
도 시 교 통 실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3,505	△1,758	1,746
문 화 본 부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1,335	△1,335	-
도시기반시설본부	위 레 신 사 선 건 설 (민 자)	4,800	△1,300	3,500
기 후 환 경 본 부	서울시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	1,311	△1,289	21
관 광 체 육 국	2021년 제25차 ANOC 총회 개최	1,250	△1,250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10,070	△1,240	8,830
도 시 교 통 실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 개선 (전환 사업)	1,392	△1,217	175
문 화 본 부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1,906	△1,200	706
"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3,462	△1,200	2,262
도 시 교 통 실	도 봉 도 시 철 도 차 량 기 지 공 동 물 류 센 터 조 성	1,170	△1,170	-
소방재난본부	예 비 비	3,470	△1,150	2,320
"	소방 특별 회 계 일 반 전 출 금	853,843	△1,150	852,693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복 지 시 설 운 영 지 원	97,758	△1,100	96,658
기 후 환 경 본 부	환 경 개 선 부 담 금 징 수 교 부 금	6,188	△1,099	5,089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26,933	△1,090	25,842

※ 주1) 전액 시비 사업중 10억원 이상 감액편성 요청된 사업으로 한정

V.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 「지방재정법」 제5조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⁵⁶⁾ 「지방재정법」 제36조2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⁵⁷⁾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는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⁵⁸⁾ 서울시는 지난 7월, '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바 있음
- 지난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의결된 본예산에 대한 대규모 경정라는 점에서 추경안 제출시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산시점에 '20회계연도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상거 미달성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⁵⁹⁾
 - 서울시는 이번 '21년도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당초 본예산 심사시 제출하였던 성과계획서를 일부 수정하여 제출함에 따라 '20회계연도 결산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 대규모 미달성 사례는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됨

56)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7)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본문 생략)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p.126

○ 다만,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는 수정제출하였으나 당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수정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지난 7월, 우리 의회는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구분가능 하도록 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등을 제고한 사실이 있어,⁶⁰⁾
- 추경안으로 통해 경정 요청된 사업중 32개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초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수정제출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표 5-1A〉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증·감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 감 액	추 경 안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60,696	2,103	162,79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2,922	△3,454	9,468
여성가족정책실	가 정 양 육 수 당 지 원	174,711	△3,340	171,371
"	특 화 보 육 지 원 (자 체)	42,919	△2,493	40,425
"	어 린 이 복 합 문 화 시 설 건 립	857	△853	4
경 제 정 책 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922	△691	2,301
"	지 역 주 도 형 청 년 일 자 리	6,551	△602	5,948
복 지 정 책 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0,729	△527	10,202
인 재 개 발 원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817	△317	499

60)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3조의2(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표 5-1B〉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증·감편성 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증 감 액	추 경 안
복지정책실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609	△209	400
관광체육국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05	△205	-
복지정책실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059	△198	16,861
인재개발원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266	△162	103
여성가족정책실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1,968	△100	1,868
관광체육국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748	△83	665
여성가족정책실	안심귀가스카우트	5,618	△80	5,538
비상기획관	시민안보의식 함양	140	△80	60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20	△70	150
문화본부	문화도시 서울	866	△60	806
복지정책실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940	△50	890
여성가족정책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92	△42	4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268	△40	228
"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126	△40	86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95	△30	165
시민소통기획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3,973	△25	3,94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 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	480	△25	455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911	△20	891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2	△15	27
시민건강국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598	△14	584
여성가족정책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295	△12	283
미래청년기획단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200	△10	190
시민건강국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728	△10	3,718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⁶¹⁾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 제도라는 점에서⁶²⁾
 - 이미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기정예산(40조 4,123억 8,600만원)보다 4조 2,583억 1,200만원이 증액된 44조 6,706억 9,900만원으로 예산규모를 변경한 사실이 있고,
 - 이번 제2회 추경안의 경우에도 기정예산보다 1조 7,857억 4,900만원 증액된 46조 6,480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변경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21년~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사업규모의 변동 등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시와 대조적인 대응으로 사료됨
 -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 심사시 의결된 예산의 규모, 세부사업의 내역에 대한 대규모의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의결된 이후

61)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2) ① 행정안전부,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20. 7), p.1
 ② 서울특별시,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 8), p.279

라도 관련법령 등⁶³⁾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여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괴리된 상태를 방지하기 보다는 계획 변경을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3)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20. 7), p.3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 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